

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2. 12
제 출 자 : 사 하 구 청 장

1. 제안사유

- 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사무 심의사항중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의 위탁운영기간을 “3년”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“5년 이내”로 개선하여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기회를 주어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되고자 하는 사항임.

2. 주요골자

-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5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임. (안 제7조)

3. 관계법령

-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

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탁운영하는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기간 만료시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위탁운영기간) 위탁운영하는 기간은 <u>3년</u>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위탁운영기간) <u>5년 이내</u>로</p>